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단333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임규영, 최원준, 정영덕, 정현진, 오재훈, 문준일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2020. 1. 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5,96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9. 1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12억 원을
대여하였고, C(개명 전 성명 : F)은 같은 날 E가 D을 상대로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1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D은 2014. 12. 30. G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E를
상대로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소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3) 소외 유한회사는 2020. 2. 25.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E를 상대로 가지는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유한회사는 2020. 9. 21. 의정부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다.

4)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9657호로 E와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 8. 11. 「E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833,809원 및 그 중
66,867,776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1,4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C과 피고의 모친인 H은 1995년 이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H은 2020. 1. 8. 사망하였다.

6) H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I이 있었는데, 피고, C, I은 2020. 3. 20.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접수 제36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주채무자인 E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보증인인 C에 대하여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은 자신의 명의로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칙적으로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2020. 5. 18.경 망 H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C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C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C이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망 H으로부터 2013. 2. 6. 금 2,000만 원을, 2017. 2. 10. 자녀 J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2018. 7.경 현금으로 1,7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위 각 돈은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망 H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4,400만 원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7,893,000원(2017년경 K조합의 감정가격 57,893,000원 - 대출금 채무 4,000만 원)이다. 따라서 간주상속재산은 133,893,00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400만 원 +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의 K조합 감정가격 57,893,000원 - 대출금 채무 4,000만 원 + C에 대한 사전증여 7,200만 원)이고, 법정상속분액은 피고, C 및 I이 각 44,631,000원(= 133,893,000원 X 1/3)이 된다. 그렇다면 C은 망 H으로부터 7,200만 원을 사전증여받아 자신의 법정상속분액 44,631,000원을 초과한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상속지분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상속지분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망 H이 생전에 C에게 합계 7,2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망 H이 2017. 2. 10. J(생, C의 딸로서 망 H의 손녀이다)에게 송금한 3,500만 원은 성인인 J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8. 7.경 망 H의 M조합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의 경우 C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 H이 2013. 2. 6. C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역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C이 특별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피고가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망 H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8. N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망 H이 N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피고가 2020. 4. 1. 인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강현구

